

□ 2023년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준수사항

■ 「평생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평생교육이용권 운영 규정」 등에 근거하여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은 평생교육바우처 사업 운영·관리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1)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이하 "사용기관"이라 함)은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대상자가 평생교육바우처 카드를 사용하기 위한 평생교육시설로서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용기관 등록 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 발생일 즉시 등록 사항 변경 입력 혹은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 사용기관 폐업 또는 등록 자격을 상실할 경우 즉시 통보해야 하며, 별도의 통보가 없이 해당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용기관 운영 중지 또는 등록취소 처리 될 수 있음.
- (2) 사용기관은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에게 우수한 평생교육 강좌 및 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함)가 평생교육바우처 카드를 이용하여 수강 신청한 경우, **본인 수강 및 부정 사용(목적의 사용 등)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교육과정 정보를 카드 결제 정보와 함께 카드 결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합니다.
- (3) 사용기관은 이용자의 매 강좌 출결 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학습 참여를 독려하여야 하며, 강좌 종료 후 14일 이내에 이용자의 출결사항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수강 강좌의 출석률 80% 미만 시 미이수로 처리되어 차년도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시 후순위에 배치되는 등 향후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 선정 등의 자료로 활용되므로 사용기관은 사실에 입각하여 출결 사항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허위 또는 오류, 불성실 보고 시 책임 정도를 감안하여 그에 상응한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4) 사용기관은 이용자의 학습비를 반환해야 할 경우, 「평생교육법」 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학습비 반환 기준에 따라 바우처 카드 전체 또는 부분취소를 통해서만 환불을 진행해야 하며, 이를 대신한 별도 물품 제공 및 현금 지급 등은 불가합니다.
- (5) 사용기관은 기관 등록 신고 자료(운영규칙, 교육과정·학습비, 등록 홈페이지 등), 강좌 운영계획서, 이용자의 강좌 신청서·출석부 등 평생교육바우처 사용 관련 자료 등의 서류를 반드시 보관하여야 하며 평생교육바우처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실시 등에 따른 사실 확인 필요 시 자료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6) 사용기관은 이용자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체제 마련을 위하여 기관 및 운영 교육강좌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사실과 다른 허위과장 광고, 제도 오안내, 기타 부정확한 정보 제공 등으로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 바우처 사용기관의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 정보, 교육 및 거래 등에 관한 의무와 책임은 사용기관(판매자)에게 있습니다.
- (7) 사용기관은 평생교육바우처 업무와 관련하여 얻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평생교육바우처 사업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 ※ 평생교육바우처 제공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정보에 대한 보호 위반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내지 제7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8) 사용기관은 평생교육바우처 사업의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 체제 마련을 위하여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평생교육바우처를 발급 또는 이용하는 행위를 방지해야 하며, **부정사용 처리에 협조해야 합니다.**
 - 사용기관은 이용자가 바우처 카드를 사용할 때,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타인의 부정 사용을 방지해야 합니다.
 - ※ 이용자 신분증 확인, 바우처 카드 결제 정보와 실제 수강자 정보 일치 여부를 통한 본인 확인 필수
 - 평생교육바우처는 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로 결제가 가능하며, 이외 결제사항은 목적 외 사용으로 관련 법규 및 규정 등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재료비 사용 불가, 교재 단독 구매 불가(해당 강좌 수강 및 바우처 결제 필수), 유아어린이 등 만9세 미만 이용자 대상 강좌 및 유무선 전자통신 기기 등 바우처 사용 금지(패키지 강좌, 사은품 제공 등 포함)
 - 사용기관은 목적의 사용을 유도하거나, 이용자 동의 없이 바우처 신청·부정 사용, 수강료 허위·과다 청구, 답합 또는 환불 등의 방법을 통해 지원금을 현금화하여 제공한 경우 등, 부정행위 정도에 따라 부당 이득금액 반환 및 제재 부과금 부과, 사용기관 운영 중지 또는 등록 취소,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평생교육법」 제16조의3(평생교육이용권 사용 등), 동법 제45조의3(벌칙), 「공공재정환수법」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동법 제9조(제재부과금의 부과징수) 등에 따라 부당 이득(청구)금액 반환 및 최대 5배의 제재부과금 등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9) 그 밖에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에 대한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여부 및 관련 정보 노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위 사용기관 준수사항 미준수시 사용기관 운영 중지, 등록 취소,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가 있을 수 있으므로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 지원, 부정사용 방지 및 처리, 사업 운영 관리 등에 적극 이행·협조하여야 합니다.

※ '22년 대비 변경 및 추가 내용 별도 색 표기